##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53 발의연월일: 2023. 2. 21.

발 의 자:전해철·고영인·김회재

이인영 · 임종성 · 김민기

황 희·김민석·정태호

김종민 • 이동주 • 박 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 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 ~ 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 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 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함.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제11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208호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인적 사항
- 2. 사용목적
-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제7항(종전의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제38조제2항제3호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9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제36조제9항"을 "제36조제10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08호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9208호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
	담금을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
	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인적
	<u>사항</u>
	<u>2. 사용목적</u>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
	준이 되는 매출금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
	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항</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u>⑦</u> 제6항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 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 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 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⑧・⑨ (생략)

<신 설>

	<b>.</b>				
<u>8</u>				제6형	<u>}</u> _
(n) - (10)	(처체	게이하	וח	عا) U.	ㅊ).

- <u>(9)</u> · <u>(10)</u> (연행 제8앙 및 제9앙 과 같음)
- ①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 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 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 건축물대장 등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3.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 ① (생 략)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2. (생략)
-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u>제36조제8항</u>에 따른 교부 금
- 4. ~ 8. (생략)
- ③ ④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6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 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자
- 2. (생략)
- ③ (생 략)

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u>제36조제9항</u>
-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